

大邱直轄市達西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免除 關한條例制定(案)審査報告書

1992. 11. 6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8. 31
- 다. 회부일자 : 92. 9. 2
- 라. 상정일자 : 92. 9. 18
- 마. 재상정일자 : 92. 11. 6

2. 제안설명 요지

-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산세 종합 사업소세를 과세면제코자하는 규정의 신설
- 92. 9. 31 현재는 우리구 관내에 면제대상 법인이 없으나 향후 취득에 대비하여 내무부 시달 준참에 의거 조례 제정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권장하는 견지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배영철 위원 : 종교단체에서도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혜를 주는 본 조례는 반대.
- 김석봉 위원 : 의료법인을 적극 유치한다는 면에서 조례제정을 적극 활성화하며 향후 본 조례가 문제가 있을시 개정토록 하자는 의견임.
- 손성태 위원 : 비영리 종교단체가 너무 비대해지는 현실을 볼때 또 다시 특혜를 주는 본 조례 제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이장우 위원 :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이며 현실적으로 본래의 취지가 약간은 바뀐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도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생각함.
- 양종학 위원 : 본 조례 제정(안)은 종교단체만 국한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점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나 우리구 관내에 훌륭한 시설의 의료법인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사료됨.
그러나 상부 준칙에 의한 무조건적 조례 제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함.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배영철 위원, 손성태 위원(2명)

찬성 : 우승기 위원, 사회준 위원, 최학득 위원, 류광현 위원, 이장우 위원, 김석봉 위원, 양종학 위원(7명)

7. 첨부 : 조례제정(안) 1부

大邱直轄市達西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